

朝鮮朝 鄉約의 福祉行政機能과 意義*

곽 효 문**

〈目 次〉

- I. 머리말
- II. 조선조 향약의 수용과 시행
- III. 향약의 기능
- IV. 향약의 복지행정사적 의의
- V. 맺음말

〈要 著〉

향약이란 향인들끼리 마련한 약속으로 향촌의 교화와 선도를 통한 고대 이상 사회(ideal society)의 구현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주자학의 전래와 함께 유입된 향약은 조선조의 사회에서 향촌의 교화를 통하여 이상사회의 확립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며, 향약의 본문에 해당하는 4대 덕목(德目)은 이와 같은 향약의 목적에 기여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향약은 국가에서의 장려사항이었을 뿐 의무사항은 아니었으므로 모든 촌락에 보급되지는 않았으나 주자학에 뜻이 있는 학자나 선비가 있는 지역공동체에서는 제각기 현지사정에 맞도록 약간씩 변형시키면서 실천함으로써 주민들의 공동체생활에 크게 기여하였다.

향약은 원칙적으로 주(州)·현(縣)을 단위로 한 것이나 지역의 실정에 따라 소규모적으로 촌락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되기도 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어 민간부문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주도된 공동체운동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향약의 주된 내용을 보면 덕업상권(德業相勸),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교(禮俗相交), 환난상휼(患難相恤)은 공통사항이었는데 사회복지기능은 환난상휼에 집약되며 이러한 성격은 사회복지기능의 온상(溫床)이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약의 사회복지기능의 의의를 구명(究明)하기 위해서는 향약과 사회복지와의 함수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제어: 향약, 덕목, 이상사회, 지역공동체,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휼】

* 이 글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유익한 논평을 하여 주신 익명의 세 분 심사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한영신학대학교 교수 (Ph. D. in Social Welfare Policy).

I. 머리말

1. 연구의 목적

조선조에서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수행된 사회복지운동으로서의 향약은 문자 그대로 향인들끼리의 약속이고 맹세이며 동시에 한 마을의 사람들이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자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우리 조상들이 서로 돋고 꾸짖어 가면서 원만하고 화목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자 한 생활모습과 가치관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약은 향촌에서 상부상조와 유교주의 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한 자치규약으로서 그 명칭의 사용은 중국 송나라의 여씨향약의 기본규약에 주자가 증손(增損)한 주자증손여씨향약을 준용하여 시행하였고 이 강령을 고을의 실정에 맞게 차츰 개선하여 나갔으며, 정교(政教)에 있어서는 주자학을 사상적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16세기 사림정치가 본격화되면서부터는 향약을 통한 향민교화(鄉民教化)의 필요성이 재야사립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 위에 도학정치를 강력히 주장하던 조광조가 중종 대에 입사(入仕)하게 되자 그의 창도로써 향약의 시행이 본격화되었으며 이후 많은 향촌에서는 소학에 부록이 되어 전래된 규약을 이행하던 바탕 위에 강령이 정비되어 시행되기에 이르렀지만 초기의 시행 주창자인 조광조와 그 일파가 중종14년(1519)에 소위 기묘사화로 실각되자 향약의 실시도 일시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하지만 그 후 향약시행의 논의는 계속되었으며 선조 이후 효종, 현종, 숙종 대를 거쳐 영·정조 시대에는 향약의 시행이 자못 활발해졌다.

향약의 시행은 재향사립파들의 향풍규정이라는 순수한 의도도 있었지만 이를 통한 자기기반의 확대에도 많이 상관되어 있어서 조정 측의 견제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회안정기에는 조정에서도 소학과 더불어 향약을 권장한 적이 있기 때문에 향약의 시행 정도에는 때에 따라 그 기복이 많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향약의 시행에 끊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선조 중기 이후 유교윤리의 질서확립에 있어서 그 기본방향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음은 물론¹⁾ 지역공동체 구성원들끼리의 상호부조의 성격을 뼈으로써 오늘날의 사회에까지도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각종 사회제도의 전통과 협동에 관한 구성원들의 의식구조 등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²⁾.

1) 柳洪烈, “朝鮮鄉約의 成立”, 震檀學報 第9卷 (1938), p. 450.

이 글에서 향약을 연구하고자 하는 까닭도 이처럼 향약의 복지행정기능과 의의의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여겨지므로 전통사회에 있어서의 복지행정의 한 영역인 향약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통사회에 있어서 널리 성행하였던 향약에 내재해 있는 의미들을 분석함으로써 향약을 통한 복지행정적 성격의 구명이 이 연구가 수행코자 하는 목적이다.

2. 연구의 방법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우리나라의 향약에 대하여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주자 중손여씨향약의 변형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이 연구는 우리의 전통적인 고유의 사상과 집합적 조직체가 중국향약의 영향을 유교적인 표현방식으로 착상되었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이리하여 향약을 중심으로 한 복지행정사를 연구함으로써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적 토양의 명확한 이해와 구명에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의 대상과 방법은 조선시대 향약의 사회복지사적 의미를 논의의 주된 대상으로 하여 기술적 방법(descriptive method)을 채택하여 역사적 접근방법(historical approach)으로 분석·연구하였다.

역사적 접근방법은 사회현상을 철학적이고 연혁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사회체계의 역사적 특성과 그 역사적 토대를 분명하게 하며 나아가 토착적이면서 고유한 한국적 모형의 복지행정사를 정립·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이러한 역사적 접근방법에 의하여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적 특성과 상황을 분석·연구함으로써 앞으로의 사회복지행정이 지향해야 할 토착적이며 고유한 모형을 정립하는데에 조력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수행에 있어서의 자료들은 주로 기존의 역사관계논저와 일반사학관계 논저, 번역된 유학자의 저서 등 주로 2차 자료에 의존하였다.

II. 조선조 향약의 수용과 시행

1. 향약의 수용

2) 나병균, “향약과 사회보장”, 하상락 편, *한국사회복지사론* (서울 : 박영사, 1994), p. 185.

1) 시대상황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 지배층은 왕조 초기부터 의욕적으로 각종 구휼(救恤), 진대(賑貸)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구휼정책은 차츰 국가재정의 궁핍으로 인하여 유명무실해져갔다. 조선조 중기 이후부터 구휼과 진대의 실시가 차츰 쇠퇴되어 갔을 뿐만 아니라 국가는 이 제도를 일종의 관영 고리대화 함으로써 민생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였다. 더욱이 토지소유가 한층 일부 지배층에 집중됨으로써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농민이 증가하였다. 이들 농민들은 양반들이 소유하고 있던 농장에 고용되어 수확량의 2분의 1을 토지소유자에게 바쳐야만 하는 불안정한 생활을 하였다. 또한 이들은 부담하여 할 각종 군역과 부역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으므로 농민들의 생활은 지극히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많은 농민들은 일정한 거주지가 없이 떠돌아다니게 되었으므로 향촌은 황폐화되어 갔고 각지에서는 도적의 무리가 성행하게 되었다.

이 가운데서도 명종 14년(1559)에서 17년(1562)까지 황해도 일대를 무대로 활약하였던 임꺽정의 경우는 대표적인 것이었다³⁾.

이와 같은 문제들은 일차적으로 농민들의 생사에까지 직결되는 것이었지만 당시의 향촌에 거주하고 있던 양반층에게도 큰 위협이 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경작하여 줄 농민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농민들의 생활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으며 이 시기에 접어들면 사회를 안정시키고 악화된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향촌사회에서는 새로운 사회보장체계가 필요하였다.

2) 수용필요성

향약의 수용은 당시의 조선조 사회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즉 국가의 사회보장체계가 점차 불안정하게 됨에 따라 하나의 지역사회 안에 거주하는 지역민끼리의 상부상조가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시대상황을 송시열은 그가 지은 회덕향약(懷德鄉約)에서 다음과 같이 상부상조의 중요성을 서술하고 있다⁴⁾.

송시열은 여러 성씨들끼리의 상부상조의 중요성을 꾀력한 다음 이들은 한 지역에 살고 있으니 서로 도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비록 그가

3) 이기백, 한국사신론 (서울 : 일조각, 1984), pp. 243-244.

4) 성주택, “회덕향약론”, 백제연구 (1978), pp. 87-109.

친척관계를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가 강조하고 있는 상부상조는 여러 성씨들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며 이것은 자연에 기초한 것이다. 추측컨대 우리 사회에 있어서 자연에 기초한 주민들끼리의 상부상조는 오랜 전통이며 자연에 기초한 주민들의 연대성은 인간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것은 전통사회처럼 서로간의 왕래가 빈번하지 않으며 하나의 지역이 하나의 경제단위가 되는 사회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였다. 송시열 또한 당시의 이러한 사정을 자신이 작성한 향약의 머리말에 반영하고 있음을 볼 때 상부상조를 위한 배경에는 자연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

그렇다면 향약이 규정한 상부상조의 범위는 어디까지 미치는 것일까?

대부분의 향약은 입약으로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입약자는 가입과 동시에 일정량의 곡식을 납부하고 이처럼 납부된 곡식이 모여서 환난상휼(患難相恤)을 하기 위한 기금이 된다. 또한 가입이 관혼상제로 인하여 경제적인 지출이 요구되거나 일시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면 가입자들이 자금을 추가로 각출하거나 일손을 내는 방법을 통하여 상부상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상부상조를 규정한 향약은 당시의 농민생활이 불안정한 가운데 국가의 사회보장체계가 점차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향촌사회에서 받아들였다고 여겨진다.

3) 수용과정

중국에서 시작된 여씨향약(주자증손여씨향약을 포함)이 주자학의 전래와 고려와 송, 그리고 원나라와의 문물교류를 통하여 소개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힘드나 이에 대한 기록을 찾기는 어렵다. 조선조 초에도 주자대전이 지식인계층에게 널리 퍼졌을 것이므로 이들은 이 책 속에 들어있는 향약을 아주 모르지는 않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중국의 명 대에 이미 주자향약과 명태조의 6유 등이 지방에 크게 번져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그 당시 조선조의 지배층은 향약에 대하여 알았다고 믿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조 초기에 바로 향약이 실시되지 않았던 것은 당시의 사회가 아직 향약을 받아들일 만한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주자학이 조선조에서 정착되고 이해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였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향약의 실시는 중종 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정책이슈로 제기되었다.

중종 대에는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조광조로 대표되는 신진사류들이 기존의

5) 김용덕, “향약과 향규”, 한국사론 8 (서울 : 국사편찬위원회, 1980), p. 222.

국정질서와 향촌질서를 유학자의 이상정치로써 실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개혁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인물 가운데 하나인 김안국은 처음으로 향약을 시행하려고 하였다. 즉 김안국은 경상도의 관찰사로 있을 무렵부터 여씨향약을 간행하여 실행하도록 노력하였다.

한편 경상도 관찰사를 사임하고 동지중추부사에 오른 김안국은 당시의 불안정한 향촌사회를 안정시키는 대책으로 여씨향약정속 등을 간행하여 전국에 배포하였다. 이것이 처음으로 여씨향약을 널리 보급하여 실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믿어진다⁶⁾.

그런데 중종 14년(1519)에 조광조 등 신진사람들은 훈구세력의 공격으로 기묘사화를 겪게 되어서 그 세력이 꺽이게 되었다. 이러한 기묘사화로 말미암아 당시에 향약의 실시는 매우 위축되었으며 표면상으로는 향약의 실시가 거의 나타나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써 중종 12년부터 14년까지 짧은 기간에 걸쳐서 실시되던 향약은 일단 침체하게 되었다.

그러나 명종 1년(1546) 8월에 주세붕이 이미 향촌사회에서 향약이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사실을 앞세우면서 향약을 모든 지역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견의에 따라서 자전(慈殿 : 대왕대비)이 대신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향약을 시행함에 있어서 폐해가 따른다면 향촌은 계 중심으로 편성하여 환난상휼의 효과를 올리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물었다. 이러한 의견 제시에 대하여 대신들은 향촌에 따라서 향약 시행의 중심인물인 약정(約正)이 될만한 인재가 있는 경우에는 향약을 시행토록 할 것이며 그러한 인재가 없는 경우에는 향약의 시행을 보급할 도리가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논의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대신들이 향약의 시행을 각 지역의 자율의지에 맡길 것이지 정부가 향약시행을 입법화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신들의 의견에 따라서 향약의 실시는 각 지방마다 임의대로 행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중앙으로부터의 입법을 통하여 강제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았다.

2. 향약의 시행

1) 향약의 구성

(1) 자치조직

향약이란 동향인리(同鄉隣里)의 사람들이 일종의 조합을 만들어 조합원끼리의 권선징악(勸善懲惡)과 동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협정한 규약을 뜻하던 것을 뒤

6) 최진옥, “중종조 향약성립에 관한 연구”, *한국사학* 6 (1985), p. 98.

에 가서는 조합 자체를 향약이라고 불렀던 것이다⁷⁾. 처음에는 유학자의 손에 의하여 향교(鄉校)를 중심으로 자치교화적인 유지단체의 성격을 띠고 출발하였으나 점차로 향청(鄉廳)을 중심으로 한 지방행정구역 안에서 지방교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었으므로 지역자치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며 조선조 중기 이후부터는 향청과 표리일체가 되어 사회복지기능을 발휘하도록 엄격하게 시행되었다⁸⁾.

이러한 향약의 입약회망자에게는 반드시 약문(約文)을 전해 주고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여 터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줄뿐만 아니라 수개월 동안 인물됨(personality)을 관찰하고 또 선행을 적극적으로 역행(力行)한다는 객관적인 판단이 내려졌을 때 입약(入約)을 허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보기인데 만약 입약신청자가 전죄(前罪)를 지었거나 약원(約員) 사이에 숙지한 처지가 아닐 경우에는 1-2년 동안의 기간을 두고 그 행태(行態)를 살펴 개과천선(改過遷善)하였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았을 때 입약을 승낙하였다.

향약에서의 임원은 도약정(都約正) 또는 약정(約正) 한 사람, 부약정(副約正) 또는 부정(副正) 두 사람, 사화(司貨) 한 사람 그리고 직월(直月) 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약정은 향약의 장으로 향약을 대표하고 약원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중심인물로서 나이가 많고 덕망을 겸비하여 모든 사람이 인격적으로 신복(信服)하는 자를 약원 가운데 다수의 추대로 선임되는 권력의 핵으로 종신직이다. 부약정은 도약정을 보좌하고 집회에 있어서 실질적인 인물인데 그 선임 역시 여러 사람의 추대로 선출하되 자격요건(eligibility)은 학덕이 높고 조행(操行)을 겸비한 사람으로 종신직이다. 직월은 향약에 따른 여러 사무를 관장하는 실무자로 약원 가운데서 매 월 윤차적으로 한 사람씩 선발하여 맡겼는데, 적임자가 없을 때는 계속하여 연임될 수 있었으며 사역시킬 노복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였다. 사화는 재정을 담당하는 자로서 자격은 반드시 서원유생(書院儒生)이라야 되었는데, 임원 가운데 한 사람을 서원유생으로 삼았던 것은 집회를 서원에서 개최하는 등 서원과 향약과의 밀접한 관계를 대변하였기 때문이다.

(2) 기본자료

또한 향약은 동약자(同約者)의 입약(入約)과 출약(黜約) 그리고 선행과 악행을 기록하는 삼적(三籍)⁹⁾을 비치하여 동약인의 출입상황과 선행 그리고 악행 등을

7) 金鍾表, 現代地方行政論 (서울 : 日新社, 1984), pp. 84-85.

8) 李相伯, 韓國史 (서울 : 乙酉文化社, 1962), pp. 210-212.

별적(別籍)으로 기록하고 유지하면서 상벌을 논하는 기본자료로 삼았다.

(3) 입약절차

입약절차를 보면 입약희망자의 처리방법은 독특하여 매우 신중하게 다루었다. 즉 추가 입약희망자에게는 먼저 향약문(鄉約文)을 주어 수개월 동안에 걸쳐 스스로 시험해 보아 능히 역행(力行)할 수 있는 다음에야 비로소 입약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리고 입약을 신청한 사람은 반드시 집회 때에 서면으로 된 입약취지서를 도약정에게 제출해야 하며, 도약정은 그 사람의 입약에 대한 가부(可否)를 동약인에게 물어 모두가 찬성(unanimity)해야 비로소 허가서를 발송함으로써 다음 집회 때부터 참석을 허가하였다. 한 마디로 철두철미한 향약의 취지에 찬동하여 실천을 다짐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입약할 수가 없었다.

(4) 집회

집회일에 대해서는 격월별로 1, 3, 5, 7, 9, 11월의 삭일(朔日:1일)에 정기집회를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이 밖에도 경조사를 맞이하여 갖는 임시집회가 있었다. 정기집회를 매 2개월마다 개최한 것은 매월 한 차례의 정기집회를 가짐으로써 오는 번거로움을 보다 합리적으로 줄여 보려는 의도에서임은 물론이다. 그리고 입약원이 만약 유고(有故)로 인하여 정기집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될 때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갖추어 기록한 이유서를 늦어도 집회날 아침에 직월에게 전달하여 이 사실을 전체 약원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처리한다는 엄격한 기율을 가지고 있었다.

(5) 경제활동의 원천

향약의 경제활동의 원천은 동약인의 입약시와 매년 마지막 집회일인 11월의 정기 출자에 의하여 마련된다. 추후 개별적으로 입약하여 참여하는 사람도 처음 입약할 때의 보기에 준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리고 출자물의 종류는 면포(綿布)와 마포(麻布), 미포(米布)의 세 가지가 있다. 처음 입약시에 참약인(參約人)들은 각각 면포와 마포 각 1필과 미포 1두씩을 출자하여 사화를 시켜 서원에 수장(收藏)하였다가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을 골라 출입을 관장시켜 후일 경조사의 구제부조(救濟扶助)에 충당케 하였다. 또 매년 마지막 집회일인 11월에는 다시 각자 미포 1두씩을 출자하여 역시 사화를 시켜 수장하였다가 용도(用途)에 보태 쓰게 하였다.

9) 삼적이란 입약적, 덕업적, 과실적을 말한다.

재원의 중식은 입약시 출자한 재원이 여유가 있을 때에는 이것을 원하는 주민에게 연 20%의 이율로 대여하며 여유가 없을 때에는 동약인에게 적당한 양만큼 할당하여 증수(增收)하는 방법으로 재정관리를 하였다.

출자된 물품의 용도관리내용을 보면 용도기준은 크게 경사(慶事)·상사(喪事)·재앙(災殃) 등 3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첫째, 경사 때의 경축례의 기준은 면포와 백미 등 현물(in kind)의 다파(多寡)로 표시하였다. 보기를 들면 국가고시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급제(及第), 생진(生進), 관자류(冠子類) 등의 등급을 두어 면포는 5필, 3필, 1필로 하였으며, 백미는 10두, 5두, 3두로 기준을 달리하여 지급하고, 혼례인 경우에는 생진과 합격자에 대한 예우에 준하여 이행하고 있었다.

둘째, 상사 때는 부물(賄物)과 조역(助役)으로 조례(弔禮)를 표시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약원 자신의 상(喪)과 약원의 부모상 그리고 약원의 처자상으로 나누어 등차(等差)를 둔 조례를 이행하였다.

셋째, 재앙 가운데 특히 화재를 당하였을 때를 가장 큰 관심사로 여기어 가옥을 전소시켰을 때에는 개초삼편(蓋草三編: 영세마름)과 재목 각 2조, 그밖에 3일 동안의 식량을 각자 지참한 일꾼 한 사람씩을 보내어 가옥의 복구작업을 마칠 때까지 도와준다는 기준 아래 용도관리를 하였다.

2) 향약의 시행

독향례(讀鄉禮)에 나타난 향약의 시행방법을 보면 독향례는 약원들에게 향약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주지시키는 한편, 규약을 계속 준수하도록 독려하여 경계하는 뜻을 갖는 일련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¹⁰⁾. 독향례의 전문은 복잡하지만 중요한 것만 우선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집회일은 원칙적으로 매월 1일이었으나 먼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연중 4맹삭일¹¹⁾에 한해서 참석하거나, 1년에 1-2회만 참석해도 무방하였다. 집회장소는 향교가 있는 곳에서는 향교를 이용하였으나 향교가 없는 곳에서는 별도로 넓고 한적한 곳을 선택하였다. 집회소에 입장하여 좌석을 잡는 데에는 여러 절차와 예법이 있는데, 대체로 입장과 자리위치는 연장자 순서로 하였다. 한 연령층이 입장할 때마다 다른 연령층과 인사를 교환한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의 적절한 예법을 규정하고 있었다. 독약(讀約)의 방법은 직월이 규약의 조문을 읽은 후 부약정이 그

10) 鄭亭愚, 앞의 논문 (1969), p. 330.

11) 여기서 맹삭일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음력 첫달 즉 정월, 사월, 칠월, 시월을 이른다.

뜻을 설명해 주고 그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질문을 허락했다. 독약과 질문이 끝나면 직월의 조사에 따라 그 내용이 만장일치가 되었을 때에만 각각 선적(善籍)과 악적(惡籍)에 정식으로 기록하였으며, 선적과 악적의 기록이 끝나면 다시 그 내용을 음미하고 확인하였다.

III. 향약의 기능

1. 일반기능

원래 향약이란 항인들끼리 마련한 약속으로 향촌의 교화와 선도를 통한 고대 이상사회(ideal society)의 구현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주자학의 전래와 함께 유입된 향약은 조선조의 사회에서 향촌의 교화를 통하여 이상사회의 확립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며, 향약의 본문에 해당하는 4대 덕목(德目)은 이와 같은 향약의 목적에 기여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향약은 국가에서의 장려사항이었을 뿐 의무사항은 아니었으므로 모든 촌락에 보급되지는 않았으나 주자학에 뜻이 있는 학자나 선비가 있는 지역공동체에서는 제각기 현지실정에 맞도록 약간씩 변형하여 실천함으로써 주민들의 공동체생활에 크게 기여하였다¹²⁾.

향약은 원칙적으로 주(州)·현(縣)을 단위로 한 것이나 지역의 실정에 따라 소규모적으로 촌락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되기도 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어 민간부문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기도된 공동체운동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향약의 주된 내용을 보면 덕업상권(德業相勸),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교(禮俗相交), 환난상휼(患難相恤)은 공통사항이었는데 사회복지기능은 환난상휼에 집약되며 이러한 성격은 사회복지기능의 온상(溫床)이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약의 사회복지기능의 의의를 구명(究明)하기 위해서는 향약과 사회복지와의 함수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덕업상권

인격수련의 덕목으로서의 덕업상권은 한 고을의 사람들이 서로 힘써서 선을 권

12) 박효문, “율곡향약의 사회복지적 성격에 관한 연구”, 행정춘추 제 12집 (연세대학교, 1994. 봄), pp. 18-23.

하는 것¹³⁾으로 오륜을 비롯한 공·사의 유가덕목(儒家德目)이 총 망라되어 있다. 이것은 유교철학이 하늘과 사람을 하나로 이해하고자 하는 철학적 사유에 기반을 두고 우주자연과 인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으므로¹⁴⁾ 유교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 강조하는 덕업의 내용은 부모에 효도, 국가에 충성, 형제 사이에 우의, 연장자에 대한 공손, 남녀 사이의 예절, 언어의 충실, 자녀의 교육, 아랫사람을 통솔하는 것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덕목들은 윤리행위의 성격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대상과 장소에 있어서도 각 개인의 행동은 가족, 사회, 국가와 유기적 관계를 맺으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부모와 형제들로 구성된 가정 속에서 가족 사이에 지켜야 할 효도·우애·공경·부부 사이의 분별 등이 가장 많이 기술되어 있다. 특히 부모에 대한 효도는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여 살아 계실 때에는 물질적인 봉양과 부모의 뜻에 순종함은 물론이고 돌아가셨을 때의 상례(喪禮)나 제례(祭禮)뿐만 아니라 부모의 묘를 이장하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효도의 개념은 향촌사회로 확대되어 웃어른에 대한 공대와 친척과 이웃 사이의 화목은 당연해야 하고 기쁘거나, 힘든 일을 당하면 함께 해결하는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자식을 가르치는 것이 공통된 내용인데 이것의 실천적인 덕목으로는 말과 행동에서부터 믿을 수 있도록 자신을 수련하는 것이 으뜸으로 되어 있다.

2) 예속상교

풍속순화로서의 예속상교는 규약을 지키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예의와 풍습으로 사람의 도리에 대한 윤리적인 조목(條目)임과 동시에 교화적인 이해가 필요한 항목이다.

그러나 선악의 문제도 철학의 진위의 문제와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철학이 진위(眞偽)의 문제를 다룬 것이라면 윤리는 선악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향약의 윤리사상에 의하면 윤리적으로 선한 인간이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도의(道義)에 맞도록 다스리는 수기(修己)와 아울러 선행의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 가능하다는 설명이 된다.

그러므로 향약에 반영되어 예속상교에서 볼 수 있는 존자와 장자, 소자, 유자

13) 박영선, “율곡향약에 나타난 4대덕목의 의미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1993), pp. 69-85.

14) 황의동, 율곡철학연구 (서울 : 경문사, 1987), p. 19.

사이에서 각기 자신의 도리를 다하기 위한 덕목으로 제시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에서 장유(長幼)의 질서(秩序)가 중심이 되는 것은 유교에서 인의정신의 핵심인 효제(孝悌)를 장려하고 실천시켜 풍속을 순화하려는 교화방법이라 하겠으며, 서로 돋는 아름다운 습속은 큰 일을 당하여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도와줌으로써 공동체의식을 돈독히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속상교는 농경사회에서 볼 수 있는 연장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서 향촌사회의 질서와 안정은 물론이고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혼례를 통해서 우리의 미풍양속을 이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풍속순화를 통해서 이상적인 대동사회 건설의 이념을 실현시키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과실상규

과실상규에서는 과실의 종류를 세 가지로 분류하고 세목(細目)을 규정했는데, 의를 범하는 과실(범의지과 : 犯義之過)은 술을 먹고 주정하거나 도박하고 언행이 공손하지 않는 등 남을 속이거나 탐욕이 심한 행위이며, 약속을 범하는 과실(범약지과 : 犯約之過)은 나쁜 사람과 사귀고 수신제가(修身齊家)를 계율리 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행동의 어긋남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규제방법은 동약인이 각자 살펴서 경계하되 작은 과실은 은밀히 경계하고 큰 과실은 동약인이 공동으로 경계하며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회집일에 직월(直月)이 약정(約正)에게 보고하여 의리로써 잘 달래어 잘못을 고치도록 설명하여 권하되 끝내 따르지 아니하며 고치지 않을 때는 출약(黜約)시킨다고 되어 있다.

2. 사회복지기능으로서의 환난상휼

1) 환난상휼의 의미

사회복지기능으로서의 환난상휼은 질병, 빈곤, 상례와 기타의 환난 등을 당했을 때 서로 돋는 것이므로 이것은 현실적인 생활과 직결되는 경제적 안정과 관련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선양민(先養民), 후교민(後敎民)이라는 정치·경제사상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공동체의식의 실천과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 그리고 이기주의적인 심성으로부터 벗어나 인간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구휼의 대상 역시 수화(水火), 도난(盜難), 질병(疾病), 사상(死傷), 고약(孤弱),

무왕(誣枉), 빈곤(貧困)을 구휼의 경우로 하고 경제적 도움의 내용은 동약인이 공동으로 출자한 미포(米布)를 원본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사화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고 동약인의 경조, 기타의 환난에 대한 구휼비용으로서 지급하며,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해 여유가 있을 때와 부족할 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¹⁵⁾. 그리고 환난의 구체적인 구제에서는 그 경중에 따라 부조를 달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당시의 현실에서 주민들이 현실적인 곤란에 직면했을 때 협동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불어 공동체의식을 다졌던 덕목이었다는 데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2) 환난상휼의 사상

환난상휼은 질병, 가난, 상사, 그리고 다른 환난 등을 당했을 때 서로 돋는다는 것이므로 현실적인 생활과 직결되는 경제안정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향약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선구민(先救民), 후교민(後教民)이라는 정치·경제·사회 사상의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¹⁶⁾.

첫째, 시무책과 애민사상을 보면 당시의 현실인식과 역사의식은 소차(疎劄)¹⁷⁾를 통한 시무책으로 나타났다. 시폐와 시사를 논의하는 동시에 그 상황에 맞는 시무책의 내용은 정치, 경제, 사회, 국방 등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치자의 덕행과 입지에서부터 시폐개혁의 구체적인 대안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애인·애민 정신과 서로 관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당시의 사회를 관류하는 정치사상은 읍을 설치하고 관리를 두는 것도 목민을 위함이며, 임금은 나라에 의존하고 나라는 백성에 의존한다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백성을 정치의 주체로 보며 국가는 민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이것은 국가를 편안하게 하고 백성에게 이로우면 다행이라 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논조이다.

둘째, 구민과 교민의 조화를 보면 현실인식에서 결국 민생의 문제는 경제안정에 있다고 보았으며, 구민을 이룬 후에야 윤리·교육·문화적 문제 즉 교민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것으로 결국 환난상휼은 다른 덕목들의 기초이고 근간이 된

15) 곽효문, 앞의 논문 (1994, 봄), pp. 19-20.

16) 박영선, “율곡향약에 나타난 4대덕목의 의미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pp. 81-85.

17) 상소(上疏)와 차자(劄子)를 일컫는 용어로서 앞쪽은 임금에게 글을 올립을 뜻하며, 뒤쪽은 지난날 간단한 서식으로 하는 상소문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소차(疎劄)라는 것은 간단한 서식으로 작성된 상소문을 임금에게 올립을 뜻하는 것이었다.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환난상휼은 이와 같은 구민론과 교민론에 기초를 두고 약원들끼리의 경제적인 도움을 통해서 향촌의 경제생활을 안정시킨 토대 위에 도덕적인 향촌사회를 건설하고자 하였던 당시의 사회사조에 나타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재난과 질병, 가난, 상사, 그리고 기타의 환난을 약원들이 서로 도와 경제안정을 바탕으로 한 구민을 이룩한 후에 교민을 함으로써 외적인 것과 정신력의 조화를 추구한 내적인 것의 통합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정치적 애민사상이나 덕치는 국민들의 경제적인 안정이 우선 요구된다는 당시의 정치·경제·사회 사상은 환난상휼 덕목에서 구체적으로 표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3) 환난상휼의 특성

향약의 4대 덕목 가운데 환난상휼 조(條)는 사회복지행정의 연구에 있어서 보호기술상에 시사하는 점이 몇 가지 있다. 사회복지행정과 관련시켜 볼 때, 물질적 도움의 규약이라고 할 수 있는 향약의 환난상휼 조는 대략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인다¹⁸⁾.

첫째, 대상자는 가입과 동시에 일정량을 기여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량을 기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해주향약의 입약범례에 따르면, 처음 향약을 정할 때에 규약에 참여한 사람도 각각 무명 한 필, 삼베 한 필, 쌀 한 말씩을 내어... 뒷날 길·흉사 때에 구휼하는 자금으로 쓴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정기적인 기여에 관해서는 매년 11월의 모임 때에는 같은 약원들이 각각 쌀 한 말씩을 내어서 사화(司貨)¹⁹⁾에게 맡기며....만약 쓰고 남은 것이 있으면 필요로 하는 백성에게 빌려주어 년 10분의 2의 이식(利殖)을 받아 사창법과 같이하고 부족하면 같은 약원이 적당히 헤아려 더 내어 보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반상(班常)에게 부담을 지우는 기여량과 환난을 입었을 경우에는 받은 혜택의 양에 있어 차등분배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보기률을 들면 양반은 상민의 두 배를 기여하고 받을 때에도 두 배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²⁰⁾.

셋째, 각출된 곡식과 옷감 등은 바로 분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을 마련하여 지출에 대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금을 수단으로 한 식리사업도 허용

18) 나병균, “향약과 사회보장”, 하상락 편, *한국사회복지사론* (서울 : 박영사, 1989), pp. 185-214.

19) 향약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재화를 거두고 저장하는 일을 맡아 하는 자를 일컫는다.

20) 정형우, “조선향약의 실시 경위 및 그 내용에 관한 일고찰”, *인문학보 제23* (연세대학 교, 1970. 6), p. 120.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넷째, 관혼상제 등의 일이 있을 때마다 필요액을 추가로 각출토록 되어 있으며 각출과 급여를 통한 동약인끼리의 경제적 연대성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노동협동의 형태로도 서로 돕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해주향약의 경우에는 환난상휼의 3가지인 수화, 도덕, 사상, 질병, 고약, 무왕, 빈핍 가운데 사상(死喪)의 경우에는 현물 급여 외에 상가에 힘센 종(장노 : 壮奴) 한 명씩을 보내게 되어 있으며, 화재가 난 경우에도 지붕을 덮을 것과 재목 등 현물을 보내는 외에도 종 한 사람씩을 보내되 사흘 양식을 가지고 가서 집 짓는 일을 돋도록 하였다.

다섯째, 부조의 방법으로는 무조건의 급여뿐만 아니라 조건이 붙는 급여가 존재하였다. 예컨대 환난상휼의 조항 가운데 빈핍의 경우,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는 재물을 주거나 대여하여 가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되 대여받은 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 점차 상환해야 하는 조건이 규정되어 있다.

여섯째, 빌려간 곡식 즉 상환해야 할 부조금 등을 제때에 갚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상용하는 벌과조항이 향약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현대의 사회보장 법규에 나타나 있는 벌과조항과 비견할 만한 것이다.

이러한 환난상휼은 다분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고을의 백성을 구제함과 동시에 구휼의 적용이 환난의 성격과 대상에 따라 그 규모를 다르게 정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 분배의 공정을 위한 그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조선조 향약의 특징은 여러 지역에서 시행되었지만 시행지역마다 향약의 내용이 동일하지 않고 지역에 적합한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결국 조선조의 향약은 비록 중국 여씨향약의 영향을 받긴 하였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성격이 우리의 상황에 맞는 주체성을 지닌 향약으로 볼 수 있다. 즉 그 구성원에 따라 각기 다른 세목들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적용을 반대하고 시의에 맞추어 백성을 교화함으로써 아름다운 풍속을 이룬다는 화민성속(化民成俗)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 순수한 우리나라의 향약이라고 할 수 있다.

4) 환난상휼의 내용

환난상휼에는 수화, 도난, 사상, 질병, 고약, 무왕, 빈핍의 7가지가 있으며 각각에 대하여 동약인들이 도와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화의 경우, 큰불이 나서 재산을 모두 소진(消盡)당했을 때는 쌀 5말을

급여하되 하인은 반감한다. 또 향약의 약원은 각기 장정 1명씩을 차출하여 짚 세다발, 재목 한 그루, 새끼 열 발 그리고 자기가 먹을 양식을 가지고 와서 복구에 무료봉사를 한다. 피해의 정도가 큰 것으면 직접 구휼하고 조문한다.

둘째, 도난의 경우, 도둑을 당하면 모두 가서 구제하고 추적하여 잡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할관청에 보고하여 수사협조를 요청한다. 피해자가 가난할 경우에는 현상금을 동약인들이 부담하여 도둑을 잡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도둑맞은 재물은 그 비율에 따라 의논하고 결정하여 등분의 양식을 급여한다.

셋째, 무왕의 경우, 억울한 누명을 쓴 경우에는 합심하여 그의 누명을 벗겨주며 약원이 연대서명하여 관에 알려 구명한다. 또한 득죄(得罪)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상실한 경우에는 재물로 구제하여 준다.

넷째, 고약의 경우, 동약인이 죽고 그의 자녀가 남아 의지할 곳이 없을 때에는 그를 맡아 교육시키거나 삶의 터전을 마련하여 준다. 특히 약원의 가족 가운데 연로한 처녀가 가난해서 시집을 가지 못하고 있을 때에는 관에 알려 혼비를 지금 받도록 청원하고 약원들끼리 의정(議定)하여 부조한다.

다섯째, 빈핍의 경우, 양식이 떨어져 굶고 있을 때 재물을 주거나 대여하여 줌으로써 가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되 대여받은 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 점차 상환 토록 하며, 서로 의논하고 결정하여 진휼(賑恤)한다.

여섯째, 질병의 경우, 경증이면 사람을 보내어 문병하고 중증이면 의원과 약을 구해준다. 병난 자가 가난하면 요양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온 집안식구가 병들어 누워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면 약원들이 협력하여 경작하여 준다.

일곱째, 사상의 경우, 약원 가운데 사상을 당하면 본인상에는 쌀 6말, 부모상에는 쌀 4말을 급여하고 동거하는 처부모의 상에는 쌀 2말을 급여한다. 장례시에는 각각 장정 2명을 차출하여 햇불 하나, 초 한 자루씩 들고 가 밤샘하고 장사(葬事)를 돋게 되는데 빙자가 상을 당했을 때에는 현물부조(in kind)를 실시한다.

5) 환난상휼의 방법

환난상휼의 실천규제의 방법은 구휼할 사람이 있으면 약정에게 보고하여 직월에게 알려서 동약인이 모이게 해야 하며 재물(財物), 기물(器物), 차마(車馬), 인복(人僕) 등 무엇이나 필요한 것을 빌려줘야 한다. 마땅히 빌려줄 수 있는데 빌려주지 않거나 빌려간 것을 기한이 넘도록 반환하지 않고 손상한 사람은 약속을 어긴 죄로 논하거나 환적(患籍)이라는 장부에 기록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향약의 복지행정적 내용은 당시의 백성들이 현실적인 곤란에 직면했을 때 협동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불어 공동체의식을 다졌던 덕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려면 자원, 자본, 노동력, 기술 등이 필요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적이고 경제적인 요소가 아무리 구비되고 확보된다 하더라도 국민이 용도(用度)를 절제하지 않고 사치와 낭비를 즐기고 조세를 포탈하고 협동심이 결여되면 국민화합은 물론이고 복지사회의 재정적 근거를 잃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향약에서 규정하는 ‘나태하여 일하지 않고 떠돌며 허송세월 하거나 용도를 절제하지 않을 경우, 조세납입에 태만히 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질병으로 폐농(廢農)을 할 때에는 약원들이 협동하여 경작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자칫 물질만능사상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신적 황폐화를 방지하고 더불어 사는 인간애의 실천이라는 커다란 뜻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환난상휼의 규약을 잘 이행하느냐에 따라 선적과 환적에 올려 상별, 차상별, 중별, 차중별, 하별의 벌칙으로 응징하였다.

IV. 향약의 복지행정사적 의의

1. 향약과 복지행정과의 관계

향약은 지방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실시된 제도였다. 따라서 이러한 향약이 지방에서 자치적으로 운영되었으므로 사회복지행정과 향약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조선조 향약의 수용은 당시의 시대상황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즉 국가의 사회보장체계가 점차 불안정하게 됨에 따라 하나의 지역공동체 안에 거주하는 지역민끼리의 도움(community care)을 주고받음이 크게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부상조는 순전히 자연(地緣)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었다²¹⁾.

그렇다면 향약이 규정한 상부상조의 범위는 어디까지 미치는 것일까? 대부분의 향약은 입약으로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입약자는 가입과 동시에 일정량의 곡식을 납부하고 이처럼 납부된 곡식이 모여

21) 김용덕, “향약과 향규”, *한국사론* 8 (서울 : 국사편찬위원회, 1980), p. 222.

서 환난상황을 하기 위한 기금이 되었다. 또한 약원이 관호상제로 인하여 경제적인 지출이 요구되거나 일시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면 입약자들이 자금을 추가로 각출하거나 일손을 내는 방법을 통하여 상부상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부상조를 규정한 향약은 당시의 농민생활이 불안정한 가운데 국가의 사회복지체계가 점차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여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서 농촌사회에서 수용되었다고 여겨진다.

2. 향약의 복지행정사적 의의

공동체의식의 실천임은 물론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과 이기주의로부터 벗어나 인간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의 제시인 향약이 복지행정사적 측면에서 탐색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사회복지행정의 재정수단으로서의 경제적 연대성이 보다 실제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재정의 건전화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서 경제적 연대성으로 경제적 공동운명체 의식을 뜻하는 것으로 우선 사회보험재정의 수입 면을 보면 모르는 누구를 위해서 세금이나 보험금을 낸다는 생각보다는 이웃을 위해서 낸다고 생각이 들 때 남부대상자들의 사회보험재정에 적극적으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사회보험재정의 지출면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즉 가입자의 소비억제노력이 그의 보험요율의 저하에 기여한다고 느낄 때 절약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획일화를 막고 개별화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별화는 수혜대상자가 느끼는 욕구에 밀착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최선의 방법이 된다.

셋째, 허위신청, 과다신청에 의한 사회보험의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웃의 생활정도는 이웃이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가 규정하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수혜자격판정이나 보호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이웃의 의견이 가장 잘 반영되는 운영방식이 지역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향약에 나타난 한국인의 의식구조는 중앙집권적 관료제도와 밀착되어 있어 조선조 전 기간 동안 일관되게 유지되면서 민간활동에 끊임없이 관계해 온 관료제도는 민생문제해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다시 말해서 그 주체는 민이었으나 관의 끊임없는 통제와 간섭을 받아야 했다. 향약을 조선조의 지

역복지적 노력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중앙집권적 관료체계와 다소간의 의존적 관계에서 탈피할 수 없었다. 그리고 향약이 표방하는 향촌자치는 다원론적 의사결정의 방법이 아닌 소수의 지적엘리트인 유학을 연구하던 사대부에 의하여 주도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향약이 그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향약은 그 수용에 있어서 당시의 사회에서 필요한 사회보험적인 기능의 요구 때문이었다. 이에 대하여 향약은 환난상휼의 규정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유교적인 교화의 한 방편으로 활용되었으므로 그다지 사회보험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보기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 향약에서의 기금운영을 들 수 있다. 향약에서는 만약 재난을 당한 입약인이 있으면 그 때마다 일정한 기금을 모아서 도와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므로 제대로 구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점에서 향약은 점차 환난상휼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즉 향약이 처음 작성되었을 때에는 주로 유교적인 덕목을 강조하였으나 뒤에 만 들어진 향약일수록 점차 환난상휼에 관한 조항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그 역할이 커지게 되었다. 그러나 향약은 기본적으로 유교적인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제도였으며 이것은 지배층이 향촌사회를 지배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써 작용하였으므로 점차 소멸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었다.

V. 맷음말

향약은 우리의 조상들이 원만하고 화목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공동체 정신에서 벌로한 규범인 동시에 교화적 조직체라고 할 수 있는데, 본래는 중국의 여씨 또는 주자의 향약에서 비롯되어 우리나라에는 주자학이 조선조의 통치이념으로서 정책적으로 수입됨에 따라 도입되어 보급되었다. 이러한 조선조의 향약은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인격도야의 기능을 발휘하였고, 사회적으로는 예속과 협동 정신을 함양하였으며, 국가적으로는 공동체의식을 고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대적인 사회복지기능은 환난상휼이라는 덕목에서 잘 표출되어 있다. 이 덕목은 애민사상을 주축으로 한 자율적인 규제와 자발성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특히 그 제재의 정도에 여러 단계를 둘으로써 행위자가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그 심성(心性)을 바꾸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것이다.

이는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강조하고 인간적인 교류를 모든 가치의 근원에 두

며 이 교류가 정신적이고 형식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을 포함한 구체적인 삶의 공동체를 형성할 것을 지향하고 있다. 여기에서 인간관계를 상실하고 물질적인 것에 모든 가치를 부여하며 공동체의식을 져버리고 있는 현대인에게 이러한 향약이 주는 의미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향약을 현대사회의 실정에 맞게 고쳐서 공동체정신을 살려 잘 운영해 나간다면 이상적이고 건전한 지역복지정책으로 승화됨은 물론 사회복지기능을 더욱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지도자선정과 임원의 조직체계가 거의 완비하리만큼 자체의 인력을 동원했고 조직활동을 동태화하기 위하여 엄격한 규율로써 정기집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조적인 재원조성방법을 개발하여 자력발전체계를 착근시켰는가 하면 용도의 우선 순위를 정해놓고 모든 약원들에게 학문에 정진하도록 하면서 명백한 위약 사실이 있는 자에게는 개과천선하지 않는 한 출약하는 강력한 벌칙을 두어 조직을 스스로 규율하는 방법으로써 향약을 운영해 나가는 체계를 갖추었다는 것은 당시의 사회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생각할 때 매우 진일보한 일면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은 산업화의 영향으로 물질생활의 풍요와 편리를 가져온 반면에 인간의 정서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는 무시되었으며 사회적으로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공동체적 의식보다는 경쟁과 갈등으로 군중 속의 고독과 자기소외현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경제와 윤리의 상호갈등을 극복하여 정신과 물질의 상호조화를 이루하고자 한 향약의 가치는 지금의 현대 한국사회에서도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읊미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당시의 시대상황 속에서 우리의 고유한 전통에 바탕을 두고 소규모 공동체조직으로서 향약의 실시를 통하여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고자 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현안문제들을 해결코자 하는 대안들을 이러한 향약과 같은 전통 속에서 찾는 것은 시급하고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곽효문, “율곡 향약의 사회복지적 성격에 관한 연구,” 「행정춘추」 제12집, 연세대학교, 1994.
- 김경식, 「율곡의 향약과 사회교육사상」, 서울 : 배영사, 1986.
- 김두현, 「한국가족제도연구」, 서울 : 정음사, 1949.
- 김무진, “율곡 이이의 사회사상,”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 김용덕, “향약과 향규,” 「한국사론」 8, 서울 : 한국국사편찬위원회, 1980.
- 김종표, 「현대지방행정론」, 서울 : 일신사, 1984.
- 김준석, “조선전기의 사회사상-소학의 사회적 기능분석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29, 1981.
- 김필동, “조선전기 향약의 보급과 그 사회적 의미,” 「한국의 사회와 문화」, 제10집,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 나병균, “향약과 사회보장,” 하상락 편, 서울 : 박영사, 1994.
- 명종실록, 권 13, 15.
- 박영선, “율곡 향약에 나타난 4대덕목의 의미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손인주, 「율곡의 교육사상」, 서울 : 박영사, 1976.
- 송석구, 「율곡의 사상연구」, 서울 : 형설출판사, 1987.
- 송영달, “한국행정의 토착화와 발전방향,” 「사회과학논집」 제5집,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72.
- 연산군일기, 권 37, 연산군 6년 5월 계유.
- 유홍렬, “조선향약의 성립,” 「진단학보」 제9권, 1938.
- 이경식, “17세기의 토지개간과 지주제의 전개,” 「한국사연구」 9, 1973.
- 이경식, “16세기 지주층의 동향,” 「역사교육」 19, 1976.
- 이기백, 「한국사신론」, 서울 : 일조각, 1982.
- 이병걸, “조선초기 영남기호사립의 접촉과 그 추이,” 「한국사연구」 26, 1979.
- 이병도, 「율곡의 생애와 사상」, 서울 : 서문당, 1973.
- 이상백, 「한국사」, 서울 : 을유문화사, 1962.
- 이준호 편역, 「율곡의 사상」, 서울 : 현암사, 1975.
- 이태진, “14, 5세기의 농업기술의 발달과 신흥사족,” 「동양학」 9, 1978.

- 이태진, “16세기의 川防(洑) 관개의 빌달,” 「한우근박사정년기념사학논총」, 1981.
- 정형우, “조선향약의 구성과 그 조직,” 「이홍식박사회갑기념한국사학논총」, 서울 : 신구문화사, 1969.
- 정형우, “조선향약의 실시경위와 그 내용에 관한 일고찰,” 「인문과학」, 제23호, 연세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970.
- 조남국 편역, 「율곡의 사회사상」, 서울 : 양영각, 1983.
- 중종실록, 권 12, 14, 26, 27, 32, 34, 37.
- 주영희, “향약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5.
- 지교현, “조선조향약의 사회적 기능”, 「청주교육대학논문집」 제13집, 1977.
- 최문향, “율곡 향약의 사회윤리적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1987.
- 최성안, “조선시대의 지방자치제도로서의 향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 한상권, “16세기 대중국 사무역의 전개,” 「김철준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 1983.
- 한상권, “16 17세기 향약의 구조와 성격,” 「진단학보」, 제58집, 1984.
- 현상윤, 「조선사상사서울」, 서울 : 민족문화사, 1986.
- 황의동, 「율곡철학연구」, 서울 : 경문사, 1987.

Abstract

A Study on the Significance and the Function of Welfare Administration of Hyangyak in Chosun Dynasty

Hyo-Moon Kwak

Hyangyak is a kind of promise which the villagers made to educate and guide the people in country village to embody an ideal society. It started in Chosun Dynasty when the studies about Jooja science begun, and it had 4 virtues of rules to fulfill the goals.

It was not the duties to the people but encouraging parts, so not in every place of the country took these but in the communities where the scholars and classical scholars interested in the studies about Jooja science took them. The classical scholars in communities transformed Hyangyak according to their communities situations and taught people to help one another.

Hyangyak originally classified into some regions but it was developed in hamlets later as they gathered the small towns. It was remarkable since it was developed by the needs of the people in communities by private sector not by the force of government.

The main contents of Hyangyak composed common future such as Duckupsanggwon, Gwasilsanggyu, Yesoksanggyo, Hwannansanghyul. Social benefits function are intensive and its character might become to cohered of social benefit function. Therefore, to be identified the meaning of social welfare function for the Hyangyak, required to be observed correlation between Hyangyak and welfare administration.

【 Keyword: Hyangyak, Virtue, Ideal Society, Community, Duckupsanggwon, Gwasilsanggyu, Yesoksanggyo, Hwannansanghyul 】